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FTA협상 추진에 따른 농·축산분야의 기능보강, 「주민생활서비스」 전달체계 개편,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능 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총정원 : 576 ⇒ 577명(증 1)

1) 집행기관 : 564 ⇒ 565명(증 1)
 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: 5급1명(행정 9급 1명 상계조정)
 - 총액인건비 관련 정원 순증 (행정 1명)
2) 의회사무과 : 12 ⇒ 12명(변동없음)

나. 집행기관 : 564 ⇒ 565명 (증 1)

1) 본 청 : 288 ⇒ 292명(증 4)
2) 직속기관 : 105 ⇒ 105명(변동없음)
3) 사 업 소 : 14 ⇒ 13명(△1)
4) 읍 : 20 ⇒ 21명(증 1)
5) 면 : 137 ⇒ 134명(△3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

1)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
2)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3)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설명회 개최
 - 도 자치행정과 - 3408(2006.4.30)

나. 기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3). 입법예고

1) 예고기간 : 2007. 6. 22 ~ 7. 11(20일간)

2)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성주군홈페이지, 군·읍면게시판

3) 예고결과 : 별　첨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7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65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한시정원)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1〕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							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77	292	12	105	13	21	134
정무직 계	1	1	0	0	0	0	0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445	244	7	52	7	19	116
4급	1	1					
4~5급	2	1		1			
5급	28	13	3	1	1	1	9
6급	120	71	1	7	3	6	32
7급	137	79	2	13	3	6	34
8급	106	67		18	0	1	20
9급	51	12	1	12		5	21
별정직 계	17	2	0	12	3	0	0
6급 상당	13	2		11			
7급 상당	4			1	3		
8급 상당	0						
연구직 계	2	2	0	0		0	0
학예연구사	1	1					
임업연구사	1	1					
지도직 계	31	0	0	31	0	0	0
지 도 관	3			3			
지 도 사	28			28			
기능직 계	81	43	5	10	3	2	18
기능 6급	2	2					
기능 7급	7	5		1			1
기능 8급	12	9	1	2			0
기능 9급	26	15	2	3	2	2	2
기능 10급	34	12	2	4	1		15

〔별표2〕

한시 정원표(제5조관련)

실과소별	정원		존속기한	비고
	계	내 역		
합계	6	일반직 : 6급1, 7급3, 8급2		
기획감사실	2	일반직 : 7급1, 8급1	2007.12.31	사업별 예산제도
총 무 과	2	일반직 : 6급1, 7급1	2008.06.30	행정혁신
재 무 과	2	일반직 : 7급1, 8급1	2008.12.31	복식부기